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64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김병주 · 박희승 · 이성운
어기구 · 윤준병 · 채현일
이수진 · 박 정 · 황 희
황명선 · 조계원 · 김우영
허 영 · 윤후덕 · 강득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기능구현 방법이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수정·변경이 자유로우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며,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도 모두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전 중인 것이 현실임.

미 국방부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 획득절차 정립을 착수하고 2020년 10월 별도의 획득절차(DoDI 5000.86)를 신설하여 1년 이내 최소기능시제 조기 전력화와 이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내 획득절차의 경우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개선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유무인복합체계, AI등)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된 획득절차 마련이 필요함.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113번(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과제로 소유기획제도 및 사업추진절차 개선을 통해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강군육성에 기여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의3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등과 제17조의4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절차를 정립하고 제21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제21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지속적 성능 개량을 포함한다)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중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이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라 한다) 소요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개략적인 배포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반복주기 작업을 통하여 증분적(増分的)·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이하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이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지정 및 추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계개발단계·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탐색개발단계 등 연구개발 절차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1. 체계개발단계: 핵심기능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 결정, 일정·예산·반복주기에 관한 기준 수립,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기능을 갖춘 시제품의 개발·보완, 최종 무기체계의 구축 및 시험평가 수행
2. 전력화단계: 체계개발단계가 종료된 해당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전력화 및 지속적 성능개량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속적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소요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개선사업의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거나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된 경

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생 략)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 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 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지속 적 성능개량을 포함한다)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7조의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 체계의 사업추진 등) ① 방위 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중 지휘통 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 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 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신 설>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이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라 한다) 소요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개략적인 배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반복주기 작업을 통하여 증분적(增分的)·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이하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이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지정 및 추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한다.

제17조의4(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체

계개발단계·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탐색개발단계 등 연구개발 절차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1. 체계개발단계: 핵심기능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 결정, 일정·예산·반복주기에 관한 기준 수립,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기능을 갖춘 시제품의 개발·보완, 최종 무기체계의 구축 및 시험평가 수행

2. 전력화단계: 체계개발단계가 종료된 해당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전력화 및 지속적 성능개량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속적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소요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개선사업의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